

1. 공사계약일반조건 [장비대금지급 확인관련]

원 행	개 침
<p>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제작설계자는 제작된 공사에 적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할당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제작설계단과 무관하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제작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민족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단서신설></p>	<p>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제작설계자는 제작된 공사에 적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할당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제작설계단과 무관하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제작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민족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단서신설></p>
<p>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②<설탁></p>	<p>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②<현행과 같음></p>
<p>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경과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상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p>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③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⑥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⑦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⑧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⑨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⑩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⑪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⑫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⑬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⑭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⑮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⑯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⑰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⑱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⑲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⑳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㉑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㉒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㉓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㉔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㉕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㉖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㉗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㉘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㉙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㉚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㉛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㉜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㉝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㉞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㉟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㉟</p>

원 행	개 정
<p>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 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금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금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계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 제3항 또는 제40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금인 및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 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p> <p>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 항에 따라 하수금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금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 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금인이 하수금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p> <p>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금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금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계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계약담당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금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금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금인의 자재·장비업자가 계약 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금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 항에 따라 하수금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금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 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금인이 하수금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약정은 2012년 7월 9일부 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된다.</p>	<p>부 칙</p>

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 운영방안

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지급 확대

- ◆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기계대여금 지불이 가능한 경우(건설법 제35조 제1항) 직불하도록 하고, 직불이 의무인 경우(건설법 제35조제2항) 현행 규정을 철폐해 준수

□ 현행 규정

- 기계대여금 1회 이상 미지급시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직불할 수 있으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임의규정 등을 이유로 소극적

□ 확대시행 방안

- 현재 임의규정으로 운영중인 사항은 직불 준수(건설법 제35조제1항)
 - 발주자가 직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의치 않을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불하도록 유도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대여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대여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공사 예정가격대비 82%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도급자가 기계대여업자와 계약한 경우에 운영)

- 현재 의무규정으로 운영중인 사항은 규정을 철폐해 준수(건설법 제35조제2항)

- 원수급인이 직접 지급하기로 원수급인, 하수급인, 기계대여업자간 협의한 경우
 -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기계대여업자가 원수급인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등록취소 등으로 기계대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기계대여업자가 원수급인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도

- ◆ 발주자는 현재 시행중인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하도급자 - 기계대여업자간 대금지급 확인까지 확대 시행

□ 현재 시행중인 제도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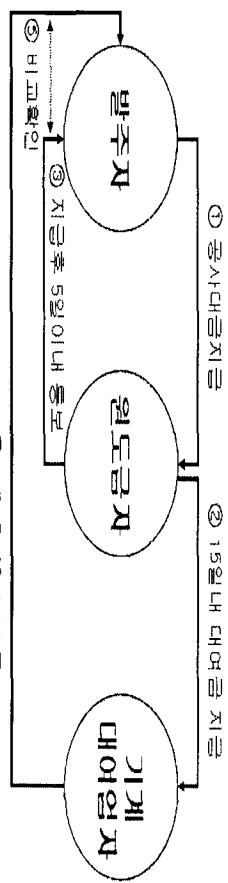
-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통해 원도급자와 기계대여업자간 대금 지급여부 확인 ('09.1월부터 시행)

- (원도급자) 대금수령후 15일이내 기계대여금을 지급하고 지급후 5일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 (기계대여업자) 대여금 수령후 5일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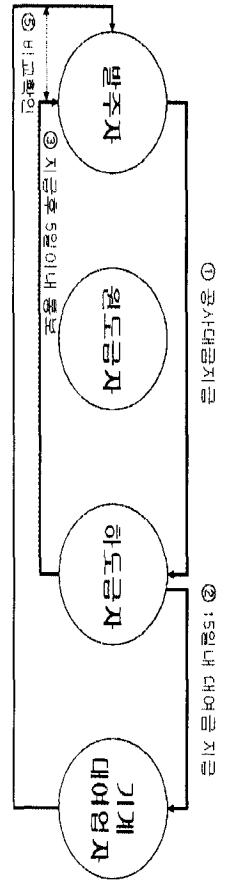
- (발주자) 원도급자와 기계대여업자의 통보내역을 비교하여 적정 지급여부 확인

<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 >



- 하도급대금 지불현장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자와 기계대여업자간 대금 지급여부 확인 ('11.6월부터 시행)

< 하도급대금 지불현장의 경우 >



④ 수령후 5일이내 통보

③ 지급후 5일이내 통보

② 비교확인

□ 대금지급확인제도 확대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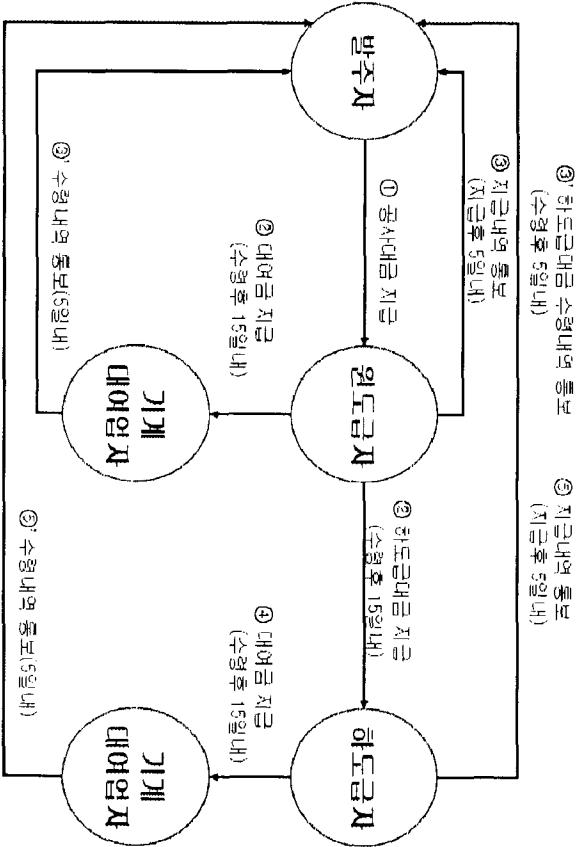
- 현재 시행중인 제도를 확대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확인제도 시행

- 발주자는 원·하도급자가 각각 계약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대금 지급여부를 모두 확인

○ 세부 시행방안

- (건설업자) 공사대금 수령시 15일 이내 기계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현금으로 지급 후, 발주자에게 지급내역을 5일이내 통보
- (기계대여업자) 건설업자로부터 대여금 수령 후, 발주자에게 수금 내역을 5일이내 통보
- (발주자) 건설업자 통보 내역과 기계대여업자 통보 내역을 비교하여 대여금의 지급여부 등을 확인

<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확인제도 흐름도 >



3. 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 치연지급 및 체불시

- 공사대금 수령후 15일이내 미지급시(건설법 제34조 위반)

- 처분청(시도 또는 시군구)에 통보 → 시정명령 후 영업정지(과징금)
 - 발주자가 직불의무 이행 → 의무이행여부 지속점검 예정

□ 건설공사대장 등 미기재 시

-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기계 대여업자 현황 미기재시(건설법 제22조 위반)
 - 처분청(시도 또는 시군구)에 통보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시

- 원·하도급자 및 대여업자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시(건설기 계관리법 제22조 위반)
 - 처분청(시·도 또는 시군구)에 통보 → 원·하도급자 및 대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장고 1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기계대금 관련 규정

제32조(하수금인 등의 지위) ①~③ 생략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남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과 제35조(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금인”으로, “수금인”은 “수금인 또는 하수금인”으로, “하수금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 남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남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로, “수금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남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로, “하수금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남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으로 본다.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금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금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시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금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금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 ②~③ 생략

④ 수금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금인이 자체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금인이 받은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금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금인에게 선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금인은 하수금인이 선금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금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금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금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금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금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금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 수금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 나. 공사 예산가격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금인의 파산 등 수금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수금인이 하수금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금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금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금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금인 간 또는 발주자·수금인 및 하수금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금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금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금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금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금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금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금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⑦ 생략

참고 2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대장 기재관련 규정

참고 3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배시 영업정지 등 규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⑤ 생략

③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④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 통보) ①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건설공사대장 등)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별지 제17호 외2서식에 따른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2 생략

3.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제5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 10 생략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같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4 생략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7 생략

② 생략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3. 제2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4~7 생략

8.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9~10 생략

참고 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상 임대차계약관련 규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제4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생략

6.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7. 생략

③~④ 생략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1일의 기동시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지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